

제주지방법원 2021. 9. 9 선고 2021가단50019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

담당변호사 박상현

피고 1. G

2. H

3. I

4. J

5. K

6. L

7. M

피고 1, 2, 3, 6,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현

변론 종결 2021. 8. 12.

판결 선고 2021. 9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,404,160원과 2021. 5. 21.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

대 803m²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29,77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4,424,960원과 2021. 5. 21.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 대 803m²의 인도완료일이나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178,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들은 2017. 8. 23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 대 803m²(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)에 관하여 각 1/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각 미등기건물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.

다. 피고들이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자임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라. 이 사건 토지의 2017. 8. 23.부터 2021. 5. 20.까지의 차임 상당 합계액은 14,424,960원이고, 2021. 5. 21. 이후 차임 상당액은 원 178,66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축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 피고들의 지료 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이나 원고들의 지료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채권이라고 봄이 옳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,404,160원(=14,424,960원 × 1/6지분)과 2021. 5. 21.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 대 803m²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29,776원(월 178,660원 × 1/6지분)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(소유권상실일은 장래 이행의 소의 종기로 적절하지 않다)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.

판사조병대

별지